

제232회 임시회
2004. 10. 27 (수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관광건설위원회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4. 10. 27(수)
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2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(2004. 10. 25)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곽 연 창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람시간 변경과
- 입장료 면제에 대한 기타 조항 및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
게시에 관한 의무규정 조항을 추가하여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증진
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(조례 제2807호 2004.7.1)에 따라
동절기 관람시간을 연장(오후 5시까지를 오후6시까지로)하고 매
표시간(관람 시간종료 1시간 전에서 1시간 30분전까지)을 조정하
도록 함(제6조, 제8조)

- 입장료면제 규정중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조항을 추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(제7조)
-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관람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(제9조, 제9조의1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 일 수)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람시간 변경과 입장료 면제에 대한 기타 조항 및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게시에 관한 의무규정을 추가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나
- 제6조 규정의 동절기 관람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은 동절기 일몰시간이 오후 5시 정도로 야간 연장시 관람객의 안정성이 우려되며
- 제7조제2항 입장료면제 규정중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 조항 신설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칫 도지사의 재량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으며, 또한 다른 관람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10호의 신설규정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며 또한 제9조 제2항 1호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10호의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를 “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로 하고
- 제9조 제2항 1호의 “ 지정된 장소의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 행위를 “지정된 장소의 흡연”으로 하며 제9조 제2항 4호 “음주 또는 취사행위”를 신설함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10. 25

제안자 : 송은섭 의원의외

가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10호의 신설규정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었으며 또한 제9조 제2항 1호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 10호의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를 “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로 하고
- 제9조 제2항 1호의 “ 지정된 장소의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 행위를 “지정된 장소의 흡연”으로 하며 제9조 제2항 4호 “음주 또는 취사행위”를 신설함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안 제7조 제2항 10호 “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”를
“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”로 한다

안 제9조 제2항 1호 “지정된 장소의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행위”를
“지정된 장소의 흡연”으로 하고
제9조 제2항 4호 “ 음주 또는 취사행위”를 신설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>제6조(개관) ①(생략)</p> <p>②청남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하절기(3월~10월)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</p> <p>2. 동절기(11월~2월)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</p>	<p>제6조(개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청남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</p>	<p>제6조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개정안과 같음</p>
<p>제7조(입장료 징수 등) 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~9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7조(입장료 징수 등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~9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p>	<p>제7조(입장료 징수 등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~9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p>
<p>제8조(입장권) ①(생략)</p> <p>②입장권 매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고, 매표소에는 입장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입장권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입장권 매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.</p>	<p>제8조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개정안과 같음</p>
<p>제9조(입장금지제한) ①(생략)</p> <p>②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. 흡연음주 또는 취사행위</p>	<p>제9조(입장금지제한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1. 지정된 장소외 흡연 및 음주 또는 취사 행위</p>	<p>제9조(입장금지제한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1. 지정된 장소외 흡연</p> <p>2. 현행과 같음</p> <p>3. 현행과 같음</p> <p>4. 음주 또는 취사행위</p>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제9조의1(요금표 등 게시)청남대관리 <u>사업소장은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을 여러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9조의1 (개정안과같음)</p>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청남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

제7조제2항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입장권 대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중 “흡연·음주”를 “지정된 장소의 흡연”으로 한다

제2항제4호 “음주 또는 취사행위”를 신설한다

제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1(요금표 등 게시)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6조(개관) ①(생략) ②<u>청남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1. <u>하절기(3월~10월)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</u> 2. <u>동절기(11월~2월)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</u></p>	<p>제6조(개관) ①(현행과 같음) ②<u>청남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.</u></p>
<p>제7조(입장료 징수 등) ①(생략) ②(생략) 1~9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<u>신설</u>〉</p>	<p>제7조(입장료 징수 등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1~9(현행과 같음) 10. <u>기타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</u></p>
<p>제8조(입장권) ①(생략) ②<u>입장권 매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하고, 매표소에는 입장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8조(입장권) ①(현행과 같음) ②<u>입장권 매표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1시간 30분전까지로 한다.</u></p>
<p>제9조(입장금지제한) ①(생략) ②<u>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1. <u>흡연·음주 또는 취사행위</u></p>	<p>제9조(입장금지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1. <u>지정된 장소의 흡연</u> 4. <u>음주 또는 취사 행위</u></p>

현	행	개 정 (안)
	<u>〈신 설〉</u>	<u>제9조의1(요금표 등 게시)청남대관리 사업소장은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을 여러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

제13조(근무시간)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
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
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.